< 붙임 1 작성양식 >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2021년도 투명성 보고서

2022. 1.

㈜아이엠아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1년도 투명성보고서

1. 일반현황 (‘21년 기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주식회사 아이엠아이
대 표 자	박수종 대표
정보통신 주요서비스 /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서비스(아이템매니아) / 10만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임상원 (법무대외팀 팀장)

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 2021. 12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유 기 훈	민 상 원
유 기 훈	민 상 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2021. 12.

imi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원칙)

제2장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3조(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및 담당자의 지정)

제4조(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및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

제5조(신고·삭제요청 처리 프로세스)

제3장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제6조(접근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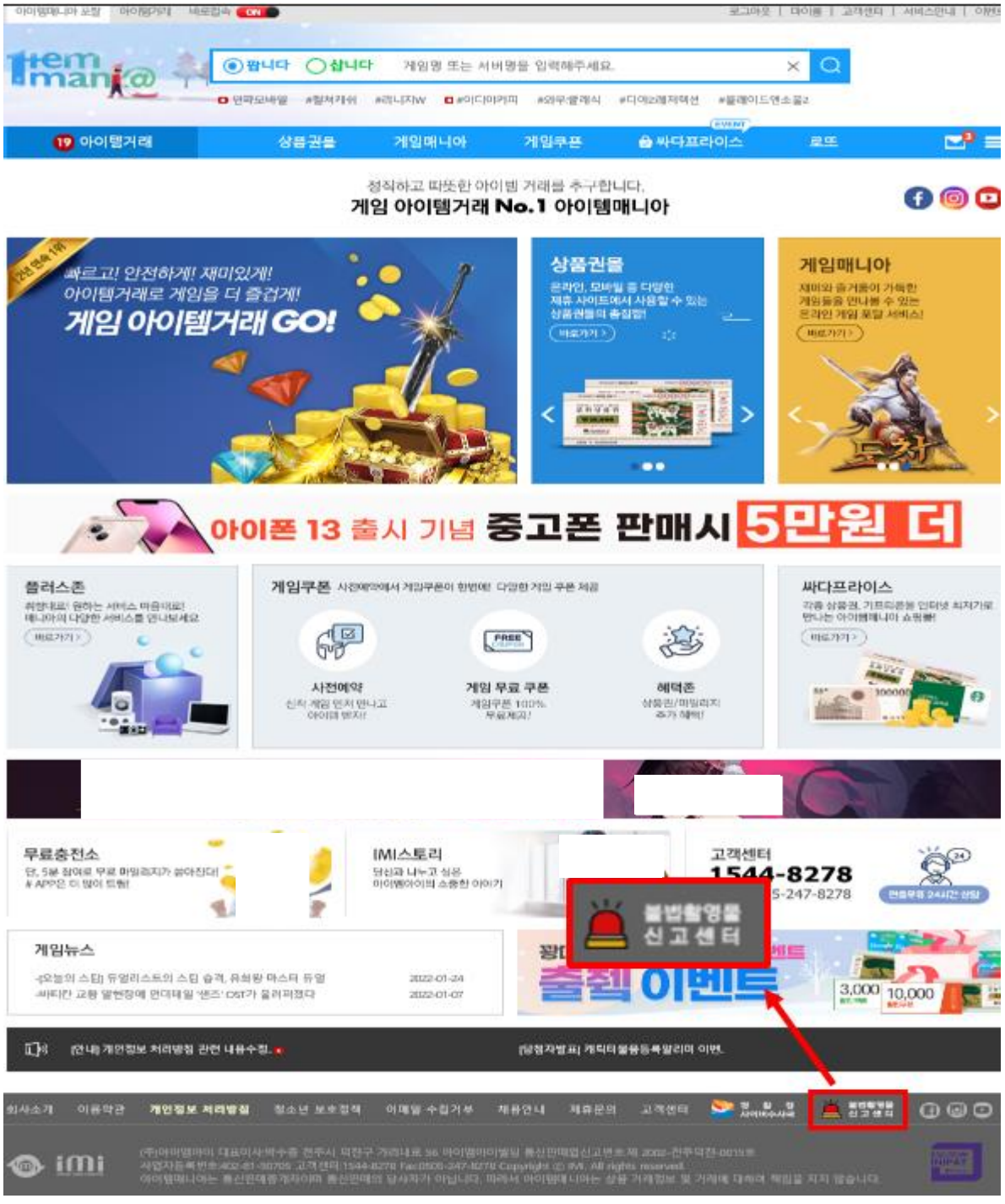
2) 불법촬영물등 신고기능 마련

○ 신고기능 마련

<웹>

ㅇ 아이템매니아 사이트 홈화면

: 신고 버튼은 이용자가 한눈에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배치



○ 불법촬영물등 신고 접수 화면

(URL : http://www.itemmania.com/portal/center/illegal/)

이용자가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 요청서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접수할 수 있는 신고· 삭제 요청 기능 제공



불법촬영물등 신고접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신고페이지 : 바로가기
-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다운받기 : 한글파일, 워드파일
- 첨부파일로 접수 시 아이템매니아 개인정보보호 담당 이메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kh4713@imicorp.co.kr)

신고·요청자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생년월일	생년월일을 입력해주세요 (예:19910502)
이메일	이메일을 입력해주세요
휴대폰번호(전화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예:01012345678)
신고 구분 선택(중복선택가능)	☐ 불법촬영물등 유통신고 ☐ 불법촬영물등 삭제요청
신고·요청 사유	☐ 불법촬영물 ① ☐ 불법촬영물 ② ☐ 허위영상물 ① ☐ 허위영상물 ②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불법촬영물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 **허위 영상물 ①** 유통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 **허위 영상물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성교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
신고·요청 대상	※불법촬영물등의 위치를 알수 있도록 URL 및 해당 화면 캡쳐본을 첨부해주세요. URL 확인이 어려울 경우 거래번호 등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확인되는 위치를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최대 1,000자 입력가능)
신고·요청 대상	※불법촬영물등의 위치를 알수 있도록 URL 및 해당 화면 캡쳐본을 첨부해주세요. URL 확인이 어려울 경우 거래번호 등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확인되는 위치를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최대 1,000자 입력가능)
첨부파일	찾아보기 삭제 - 추가 + 용량 300KB이하 jpg만 가능(최대 3개) -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로 접수시에는 아이템매니아 담당부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kh4713@imicorp.co.kr)
불법촬영물등 신고·요청 확인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삭제요청을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선택]첨부파일, [선택]생년월일 - 수집·이용목적 : 신고인 확인,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및 처리 - 보유기간 : 3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요청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신고 내용 확인 동의	☐ 불법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신고는 관련법에 의거한 불법촬영물등 신고로 접수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삭제요청서의 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제공될 수 있습니다.

접수하기 취소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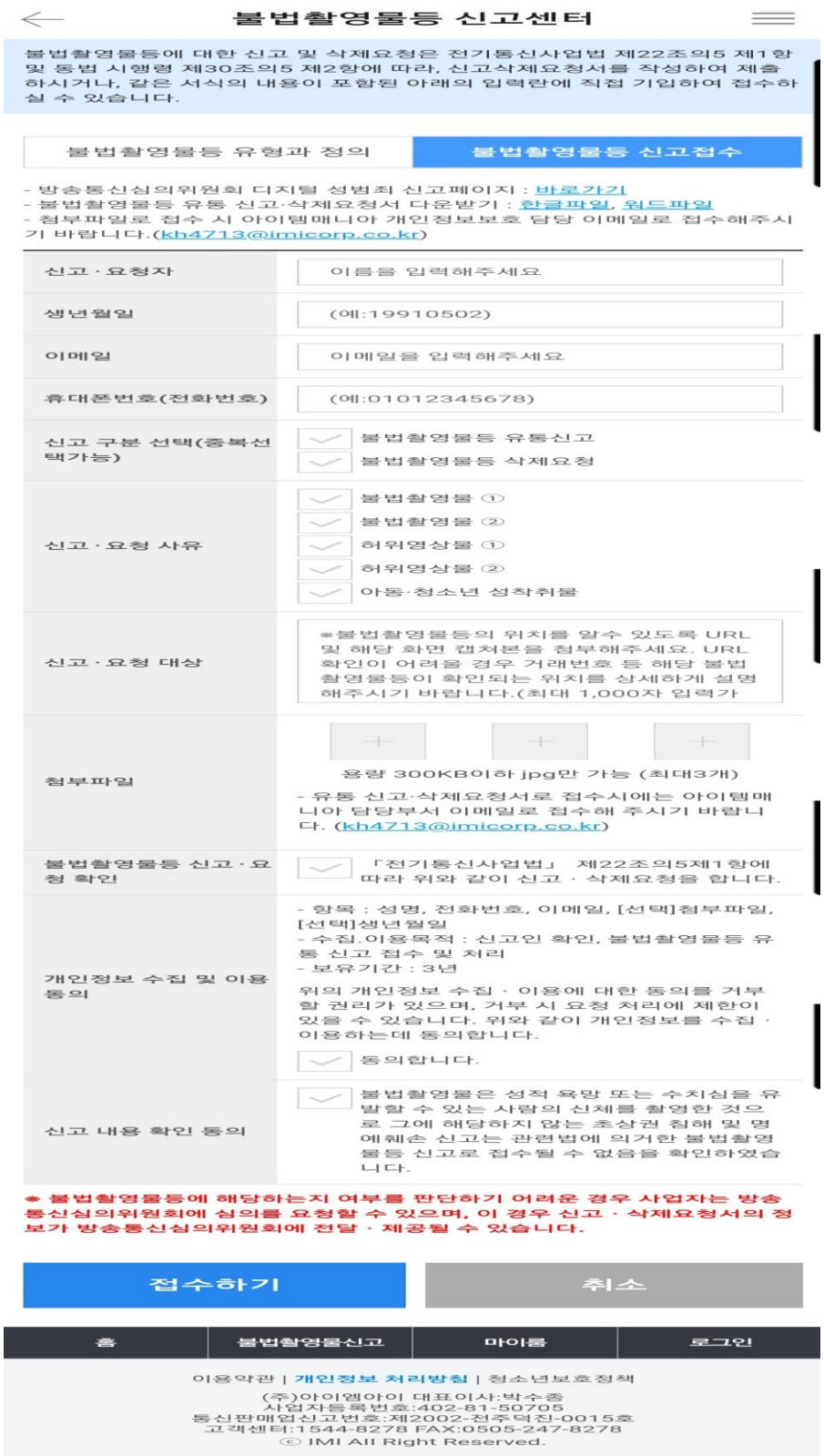
O 아이템매니아 모바일 앱 홈화면

: 신고 버튼은 이용자가 한눈에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배치



○ 불법촬영물등 신고 접수 화면

이용자가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 요청서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접수할 수 있는 신고· 삭제 요청 기능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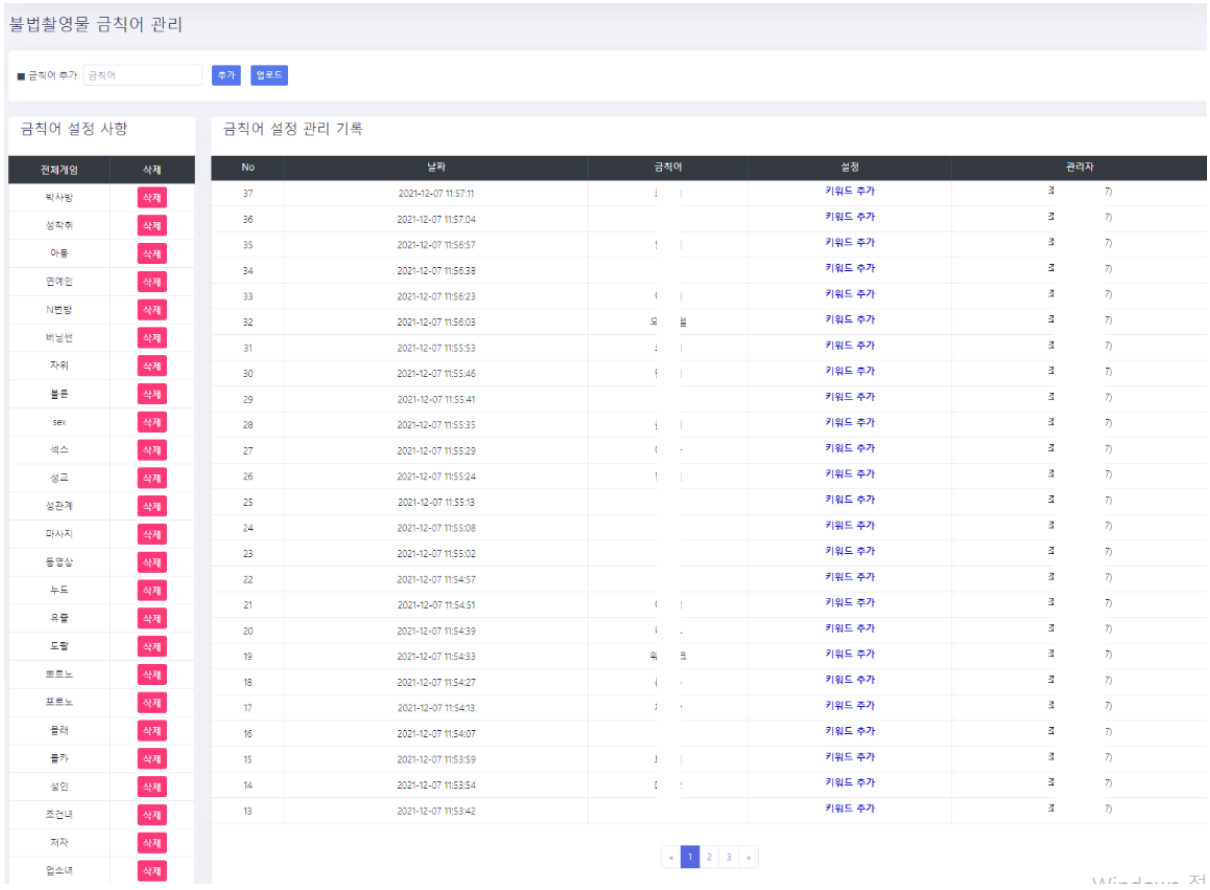
○ 신고처리 전담부서 운영

부서명	불법촬영물 신고센터
고객센터 전화번호	1544-8278
신고삭제요청서 접수 담당 메일	kh4713@imicorp.co.kr

3) 불법촬영물등 검색 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 검색결과 송출 제한

o 불법촬영물등 관련 단어 금칙어 설정 관리자 화면 *웹/앱 모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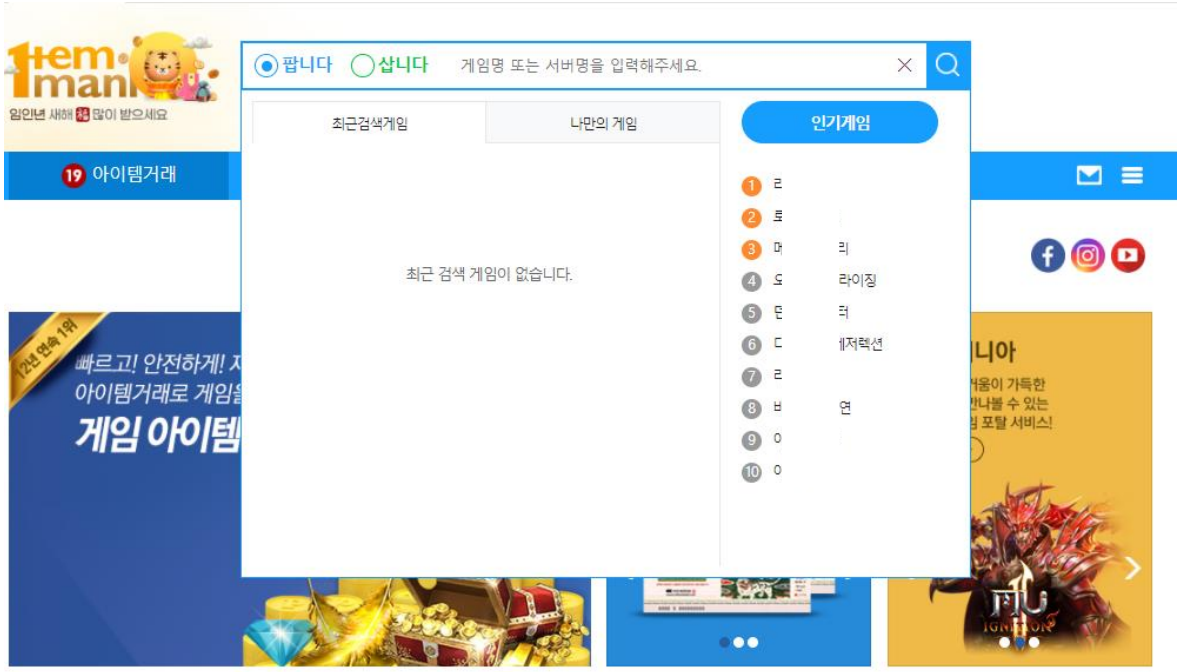


o 불법촬영물등 관련 단어 검색 시, 관련 검색결과 노출되지 않음



○ 불법촬영물등 연관검색어 등 제한

O 아이템 매니아 메인 검색창 : 게임명만 검색할 수 있으며, 게임과 관련된 연관검색어만 제시됨(게임 이외의 단어 연관검색어 제공 기능 없음) *웹/앱 모두 적용



O 아이템 매니아 게시글 검색창 연관검색어 제공 기능 없음 *웹/앱 모두 적용



4)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필터링 적용

O 아이템매니아는 스틸이미지만 업로드 가능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해설서 상 사전 비교,식별 예외에 해당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예시(사전 비교·식별의 예외)]

①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② 동영상 업로드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
ex) 업로드 기능이 없는 경우, 동영상 업로드가 불가능한 경우, 스틸이미지만 게재 가능한 경우, 주소링크나 영상태그를 통한 게재 등
③ 현재 정부 제공 필터링기술이 식별을 지원하고 있지 않는 컨텐츠 형식
- 주소링크나 영상태그를 통한 게재, 스틸이미지나, 음성 등(정부제공 필터링기술에서 식별 지원시에는 포함)
④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과 같은 위법사항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경우

5)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 사전경고 조치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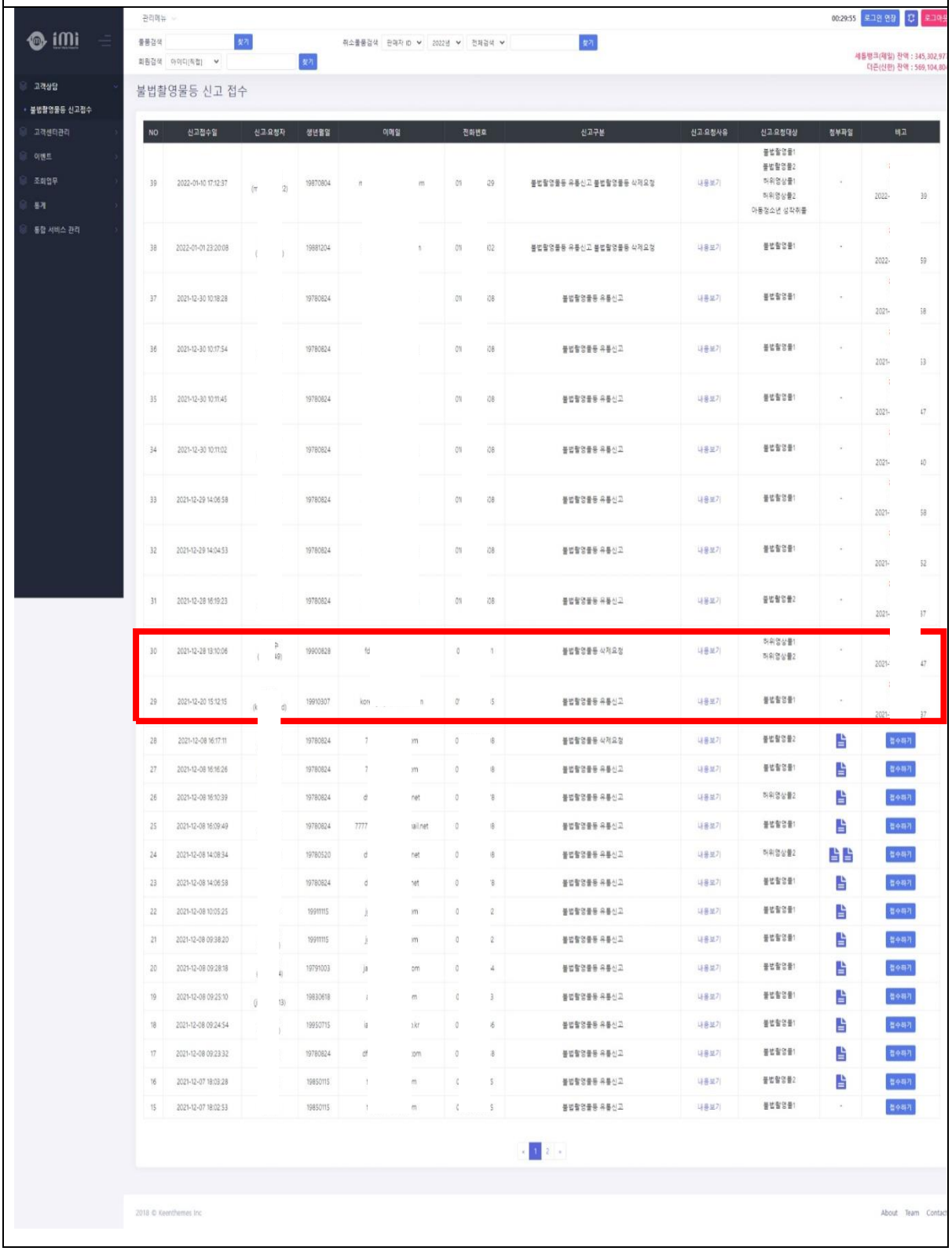
O 아이템매니아 거래화면 (URL : trade.itemmania.com/sell/)

: jpg첨부시 사전경고 팝업 안내 *웹/앱 모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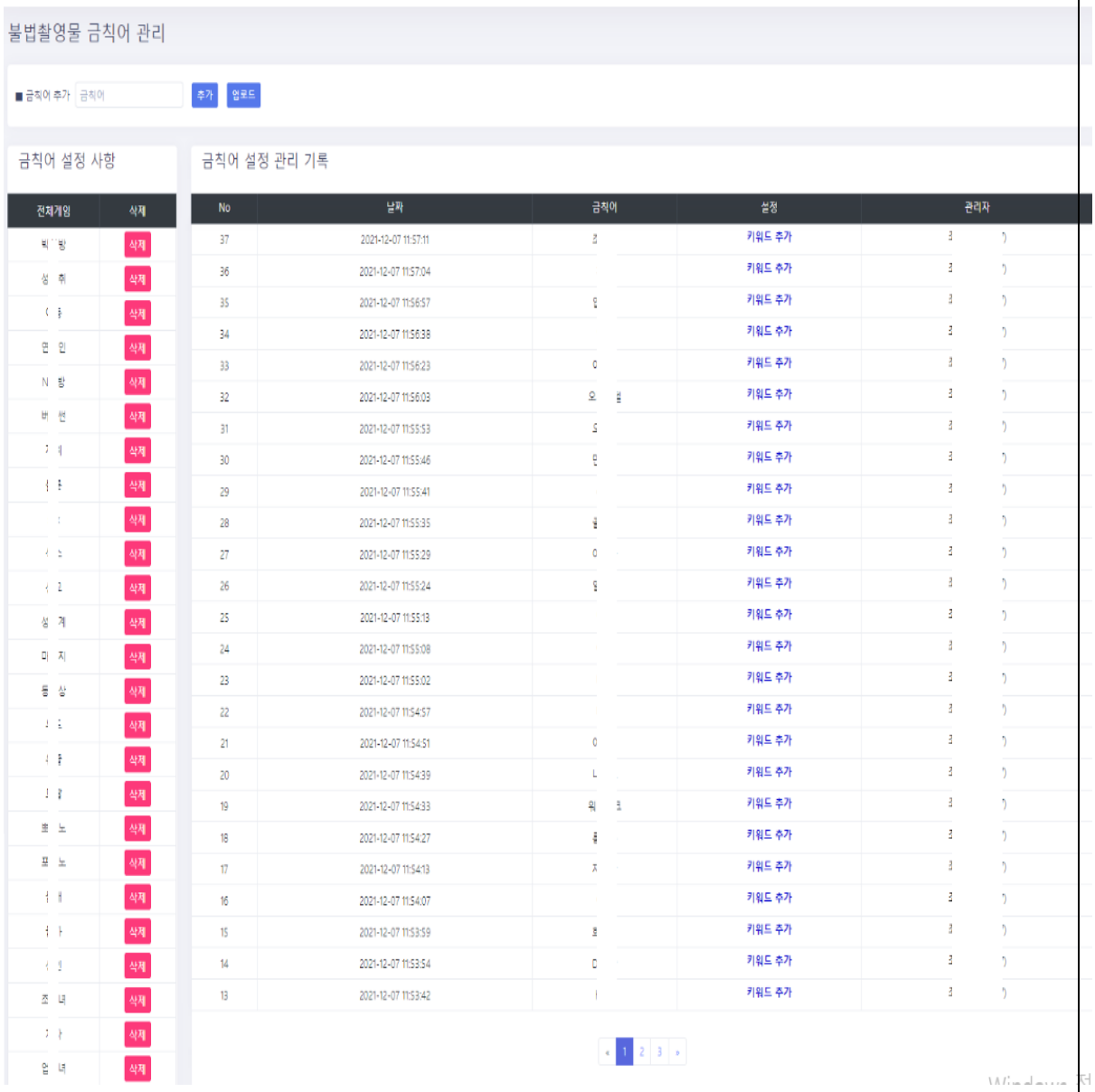


○ 로그기록 보관

O 신고· 삭제 요청 처리 로그기록 보관 관리자 페이지 (신고접수는 2건 이외 모두 테스트용)



O 검색기반 필터링 로그기록



6) 기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O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이용자 안내 강화

불법촬영물등 신고하기

홈 > 고객센터 > 불법촬영물등 신고하기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2항에 따라, 신고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같은 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아래의 입력란에 직접 기입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형과 정의

불법촬영물등이란 불법성 게시물의 일종으로,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말합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될 경우 불법촬영물등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은 일정한 사업자들로 하여금
신고 등을 받아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에는 다음과 같은 게시물이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각 호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제1항 각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

허위영상물

① 유통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 성적 행위("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

만일 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을 발견하셨다면 아이템매니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신고 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제1항

불법촬영물등 신고접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신고페이지 : 바로가기
-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다운받기 : 한글파일, 워드파일
- 첨부파일로 접수 시 아이템매니아 개인정보보호 담당 이메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kh4713@imicorp.co.kr)

3.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 신고삭제요청 및 처리결과 통계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 및 처리결과 통계

※ 대상기간 : `21.1.1. ~ 12.31.(신고접수 기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신고 접수	신고·삭제 요청인	피해자 등	0	0	0	0	0	0	0	0	0	0	0	0	
		기관·단체	0	0	2	0	0	0	0	0	0	0	0	0	
		소계	0	0	2	0	0	0	0	0	0	0	0	0	
	사유	불법촬영물	0	0	2	0	0	0	0	0	0	0	0	0	
		허위영상물 등	0	0	0	0	0	0	0	0	0	0	0	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0	0	0	0	0	0	0	0	0	0	0	0	
처리 결과	자체 삭제·접속차단(A)		0	0	2	0	0	0	0	0	0	0	0	0	
	방심위 심의요청	심의삭제·차단(B)	0	0	0	0	0	0	0	0	0	0	0	0	
		기각,각하,해당없음 등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0	0	2	0	0	0	0	0	0	0	0	0	
	삭제·차단 사유 (A+B)	불법촬영물	0	0	2	0	0	0	0	0	0	0	0	0	
		허위영상물 등	0	0	0	0	0	0	0	0	0	0	0	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0	0	0	0	0	0	0	0	0	0	0	0	

아이엠아이:
당사 업로드 게시물이 아닌 당사 사이트와 연계된 제휴 업체의 게시물로 해당 업체에 조치 요청 후, 접속차단으로 진행

※ '신고접수 사유' 및 '삭제·차단 사유'는 각각 중복계상 가능
※ 건수는 신고삭제요청 대상 URL 수를 기준으로 계상

(용어설명)

* 피해자 등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에 규정한 '기관·단체'를 제외한 신고·삭제 요청인
* 기관·단체(시행령 제30조의5) :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통위가 신고삭제 요청기관으로 고시한 13개 기관·단체
* 불법촬영물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 허위영상물 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가공물·합성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방심위 심의요청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심의요청(해당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

○ 관련 규정

○ ㈜아이엠아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내용

제5조(신고·삭제요청 처리 프로세스)

①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있을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② 불법촬영물등으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한 후 삭제 조치한다. 만일,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③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에 대해 신고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및 담당자는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처리결과를 3년간 보관한다.

제3장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제6조(접근통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불법촬영물등에 이용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불법촬영물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결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
2.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팝업창, 메일, 문자,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하는 조치

○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매니아 서비스 이용약관’ 제8조 제3항 제4호, 제11호, 제20호, 제8조 제5항

제 8 조 (이용계약의 중지 및 해지)

① 이용계약은 회원 또는 회사의 해지에 의해 종료됩니다.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해당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원의 회원 탈퇴 신청에 관한 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합니다.
1.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5일 후 이용 해지를 처리합니다. 다만, 해지 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모든 상품의 판매 및 구매 절차를 완료, 철회 또는 취소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판매 및 구매의 철회 또는 취소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지 이후라도 서비스 이용 기간 중 회원 본인의 과실로 인해 타 회원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초래하였다면 이용 해지를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거래분쟁 또는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해결 시까지 회원 탈퇴가 제한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 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등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5.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8.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9.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0.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1. 회원이 회사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 링크하는 경우
12.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13.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5.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16. 장기간 휴면 가입자에 대하여 통지할 경우 그 통지 기간 내에도 서비스이용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
17. 거래 상대방 등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경우
18. 기타 회사의 서비스개선을 위한 회사 정책상 불가피할 경우
19.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0.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행위
21.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⑤ 이용계약 해지 절차는 다음 각호에 의합니다.
1. 회사가 서비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본조 제3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아이템매니아 '아이템거래 서비스 이용약관' 제6조 제2항, 제3항

제 6 조 (이용 해지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5일 후 이용 해지를 처리합니다. 다만, 해지 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모든 상품의 판매 및 구매 절차를 완료, 철회 또는 취소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판매 및 구매의 철회 또는 취소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지 이후라도 서비스 이용 기간 중 회원 본인의 과실로 인해 타 회원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초래하였다면 이용 해지를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이용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회사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5. 회사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 및 임의사용 하거나 연락처의 허위/도용 또는 고의로 회사, 판/구매자와의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
7. 기타 회사의 영업행위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8. 기타 회사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회원의 서비스 이용 행위가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회원이 이 약관 제9조 제8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등록하거나, 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상품거래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10. 회원이 실제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물품등록을 한 경우 또는 구매의사 없이 회원의 물품에 구매 신청한 후 구매를 거부하는 경우
11.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통하여 얻은 정보로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12.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 및 임의사용 하거나 연락처의 허위/도용 또는 고의로 회사, 판/구매자와의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
13. 거래 상대방 등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경우
14. 복제품이나 해킹물품, 또는 판매목적이 아닌 물품을 등록하는 경우
15. 기타 회사의 서비스개선을 위한 회사 정책상 불가피할 경우

③ 회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아이템매니아 '아이템거래 서비스 이용약관' 제9조 제8항

제 9 조 (물품등록/구매등록)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물품등록 양식에 따라 물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 판매 또는 구매를 목적으로 제출한 물품에 대한 설명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며, 회사가 정하는 양식에 어긋난 등록이나 허위등록으로 인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③ 팔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래방법은 '자율거래'입니다. 단, 회원은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본 약관 상의 판매자 및 구매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⑤ 자율거래를 할 때 물품을 전달하거나 인수 시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등록 후'의 물품대금 결제수단으로 '마일리지', '신용카드', '휴대폰' '기타의 방법' 중 선택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⑦ 물품판매 대금을 송금 받을 수 있는 '출금계좌정보(예금주, 은행명, 계좌 번호 등)'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하며, '출금계좌정보'의 예금주는 판매자의 성명과 동일 하여야 합니다. 판매자의 성명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출금을 보류합니다.

⑧ 물품 등록 및 판매의 제한(매매불가 물품)

법률상 소유가 금지되어 있거나,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 불법 개인정보 거래, 불법 사설서버 거래, 소프트웨어 OEM 제품, 복제품, 장물, 홍보용 무료 또는 할인 상품권, 습득물, 관련법령에 의하여 제작, 유통, 판매가 금지된 성인물, 허가번호 없이 불법 복제된 성인물 및 소프트웨어, 군 형법에 저촉되는 군용품(군복, 대검, 망원경 등), 회원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어 회사가 불법물건으로 판단한 물품, 기타 회사가 풍속을 해치거나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거래하실 수 없습니다.

○ 아이템매니아 ‘아이템거래 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 13 조 (아이템거래 서비스 이용제한)

구분	정지사유	해제조건	정지효력
서비스 제한 (로그인 外 서비스 이용 불가)	- 명의(연락처) 미확인 - 해킹/사기 사고 발생 - 사고회원 관련자(연락처 및 개인정보 일치) - 상습적인 비거래 물품 등록 - 결제보안 연속 5회 오류 - 탈퇴 신청 - 기타 : 관리자 판단(정상적인 서비스 진행에 심각한 장애 유발 시)	- 정지 사유 해결 - 관리자 판단	로그인 이외의 거래, 충전, 출금 불가
로그인 제한	- 비밀번호 연속 5회 오류 - 해킹/사기 사고 발생 - 명의도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 기타 : 관리자 판단	- 정지 사유 해결 - 관리자 판단	로그인 불가
일부 서비스 제한 (구매, 판매, 송금 제한)	관리자 판단에 따라 구매/판매/송금 등 특정 서비스 外 이용은 문제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분 제한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정지 사유 해결 - 관리자 판단	특정 서비스 이용불가

○ 신고·삭제요청 처리 프로세스

①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있을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② 불법촬영물등으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한 후 삭제 조치한다. 만일,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③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에 대해 신고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및 담당자는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처리결과를 3 년간 보관한다.

○ 기타 운영관련 사항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함(아이템매니아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 제4조) -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삭제, 접속 차단 등 필요 조치 수행 - 전기통신사업법 제 22 조의 5 제 2 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수행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투명성 보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기한 내에 제출 업무수행

5.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구 분	정	부
성 명	임상원	유기철
부 서	법무대외팀	법무대외팀
직 책	팀장	대리
지정일	2020. 12. 01.	2020. 12. 01.

6.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

○ 불법촬영물등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이수

구 분	교육일 (수료일)	교 육 명	참 석 자	시 간	교육기관
교육참여	2021.8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임상원 팀장	2시간	방통위
교육참여	2021.8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유기철 대리	2시간	방통위



발급번호 : 제 2021-406066 호

교 육 수 료 증

성 명 : 임상원
소 속 : 주식회사 아이엠아이
교육기간 : 2021년
교육시간 : 2시간

위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 8. 26.

방송통신위원회

발급번호 : 제 2021-405079 호

교 육 수 료 증

성 명 : 유기철
소 속 : 주식회사 아이엠아이
교육기간 : 2021년
교육시간 : 2시간

위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 8. 26.

방송통신위원회